

■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표 1]

해양치유 프로그램의 인증기준(제15조제1항 관련)

구분	인증기준
1. 구성 및 내용	해양치유 프로그램에 활용되는 해양치유자원에 대한 이해를 돕는 설명과정과 해양치유자원 체험활동을 모두 포함할 것
2. 전문인력	가. 해양·관광·체육·보건·의료 등 해양치유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전문인력과 운영 지원인력을 각각 갖추는 것 나. 해양치유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전문인력 1명이 담당하는 프로그램 참여자 수를 적절하게 유지할 것
3. 시설 및 장비	가. 해양치유 체험장 등 해양치유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공간 및 그와 분리된 사무실을 각각 갖추는 것 나. 해양치유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는 것 다. 비상구·소방시설 등 안전시설을 갖추고, 프로그램 운영 중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대책을 수립했을 것
4. 평가 및 운영	가. 예산 확보 방안을 수립했을 것 나. 해양치유 프로그램의 보급을 위한 홍보 방안을 수립했을 것 다. 만족도 조사 및 환류(還流) 방안 등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체계를 마련했을 것